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67 호 2016. 11. 3(목)

고 시

제2016 - 87호	도로명주소 고시	1
제2016 - 88호	군관리계획(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3

공 고

제2016 - 774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제2016 - 801호	남해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15
제2016 - 803호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9
제2016 - 804호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5
제2016 - 805호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70
제2016 - 816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공고	86
제2016 - 819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87
제2016 - 827호	남해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92
제2016 - 828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상주지구단위계획도로 소로2-8호 2구간)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93
제2016 - 829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2-34호 교육청~봉황산)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97
제2016 - 830호	어업권 면허처분 사항 및 어업권 포기신고 사항 공고	100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6 - 8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481-6 외 23건
 - ※ 고사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4.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부 여

연번	중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614-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481-6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천리 268-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31	20090427	무지개 모양의 고개인 무지개골이 위치한 길임을 반영
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천리 268-6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31-1	20090427	무지개 모양의 고개인 무지개골이 위치한 길임을 반영
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신리 967-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85	20090427	남해읍에서 남해의 제2신이라 불리는 망운산으로 통하는 길임을 반영
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신187-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979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6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505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로177번길 15-23	20090427	남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22-9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46-22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동, 무림(송죽마을)의 밑구에서 출구까지 연결되는 중앙도로임을 반영
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22-9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46-24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동, 무림(송죽마을)의 밑구에서 출구까지 연결되는 중앙도로임을 반영
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417-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2000번길 24	20090427	흥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0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시대리 111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694번길 12-14	20090427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진리 신118-14, 1-1, 1-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보리암로 288	20090427	조선시대에 이성계가 백일기도를 드렸다는 금산의 밑구에서 보리암까지 연결되는 도로임을 반영
1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양항리 1440-10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778-12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1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영지리 2177-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리로394번길 24-1	20090427	상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9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72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 1901	20090427	고려 충신왕매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1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벌리 50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411-11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68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당포로 131-48	20090427	내림의 옛 이름을 이동, 당진(무속인들이 살던 집) 너머에 있는 마을이란 뜻임
1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540-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058-13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267-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신로 201-41	20090427	창선면 소재지를 지니키는 중심도로임을 반영
19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306-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385번길 9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봉화리 1735-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금암로 430	20090427	내산은 고속도로 건설 등 나라발전에 앞장선 최치환 선생이 출생한 곳으로 그의 호를 따 금암로라 함
2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302-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신로866번길 41	20091023	창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경상남도 남해군 실천면 문외리 1144-6	경상남도 남해군 실천면 실천로864번길 70	20091023	실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천리 91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천로51번길 25-6	20100915	평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폐 지

연번	중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092-3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호도길 2-1	2016.10.31	건물확인결과 존재하지 않는 건물

남해군 고시 제2016 - 88호

군관리계획(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341번지 일원에 남해군 고시 제2015-969호(2015.12.18)로 준공된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체육시설: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 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

2016년 11월 2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3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남해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 명 칭 :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1,331,102.0㎡
- 규 모 : 체육시설 320,644.0㎡, 건축시설 35,116.0㎡, 공공시설 109,095.5㎡, 녹지시설 866,246.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한 섬 피 앤 디 대표이사 강 ○ 수, 정 ○ 진
(주)사우스케이프 대표이사 강 ○ 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16년 07월
- 준공예정일 : 2017년 07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부지면적 (㎡)			구성비 (%)	비 고	
	당 초	증 감	변 경			
체육시설 소계	1,331,102.0	-	1,331,102.0	100.0	준공완료	
체육시설	소 계	300,767.0	증)19,877.0	320,644.0	24.1	18홀/72과/6,650m
	티그라운드	14,569.0	-	14,569.0	1.1	69개소
	그 린	11,900.0	-	11,900.0	0.9	18개소
	페어웨이	149,822.0	-	149,822.0	11.3	71개소
	러 프	112,619.0	-	112,619.0	8.5	
	병 커	11,857.0	-	11,857.0	0.9	
	연습그린	-	증)19,877.0	19,877.0	1.5	골프연습장 1개소
건축시설	소 계	35,116.0		35,116.0	2.6	11개동
	클럽하우스	20,990.0		20,990.0	1.6	1개동
	티하우스-1	922.0		922.0	0.1	1개동
	티하우스-2	1,204.0		1,204.0	0.1	1개동
	기 숙 사	7,809.0		7,809.0	0.6	6개동, LPG저장소 1개소
	관 리 동	3,861.0		3,861.0	0.3	1개동
	경 비 실	330.0		330.0	0.1	1개동
공공시설	소 계	114,209.5	감)5,114.0	109,095.5	8.2	
	저 류 지	33,434.0	-	33,434.0	2.5	초기우수저류지 9개소
	재해용저류지	1,002.0	-	1,002.0	0.1	재해용저류지 1개소
	진입도로	34,948.5	-	34,948.5	2.6	
	주 차 장	9,921.0	-	9,921.0	0.7	
	카트도로	28,806.0	증)984.0	29,790.0	2.2	
묘 포 장	6,098.0	감)6,098.0	-	-	삭제	
녹지시설	소 계	881,009.5	감)14,763.0	866,246.5	65.1	
	조성녹지	454,138.0	증)1,388.0	455,526.0	34.2	배수지, 오수처리장, 스프링클러
	원형녹지	426,871.5	감)16,151.0	410,720.5	30.9	

남 해 군 공 보

(6) 제 567 호

2016년 11월 3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지적	편입		주소	주소			
합 계				1,331,102.0	1,331,102.0						
1	진동리	1334	임	498.6	498.6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	진동리	1335	임	80.1	80.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	진동리	1336	임	174.5	174.5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	진동리	1337	임	4,047.8	4,047.8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34116 /32265
						정0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2 연세리버테라스 1001				지분34116 /1851
5	진동리	1338	체	15,424.0	15,424.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6	진동리	1339	임	1,058.0	1,058.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7	진동리	1340	임	14,163.0	14,163.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8	진동리	1341	임	10,829.0	10,829.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9	진동리	1342	임	18,306.1	18,306.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0	진동리	1343	임	646.9	646.9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1	진동리	1344	임	3,956.2	3,956.2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2/1
						정0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2 연세리버테라스 1001				지분2/1
12	진동리	1345	임	60,964.6	60,964.6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3	진동리	1346	체	390,568.3	390,568.3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4	진동리	1347	임	22,958.1	22,958.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34116 /32265
						정0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2 연세리버테라스 1001				지분34116 /1851
15	진동리	1348	임	3,587.5	3,587.5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6	진동리	1349	임	38.9	38.9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7	진동리	1350	임	5,125.9	5,125.9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8	진동리	1351	체	10,710.4	10,710.4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9	진동리	1352	체	11,668.0	11,668.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0	진동리	1353	임	97,159.8	97,159.8	주식회사 한섬피앤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6-5				
21	진동리	1354	체	22,766.5	22,766.5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2	진동리	1355	체	6,124.6	6,124.6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3	진동리	1356	임	21,847.1	21,847.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4	진동리	1357	체	249,388.1	249,388.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5	진동리	1358	임	12,159.1	12,159.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6	진동리	1359	임	2,553.5	2,553.5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2789 /2322
						정0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2 연세리버테라스 1001				지분2789 /467
27	진동리	1360	임	11,756.3	11,756.3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8	진동리	1361	체	85,423.5	85,423.5	주식회사 한섬피앤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6-5				

남 해 군 공 보

2016년 11월 3일

제 567 호 (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9	진동리	1362	임	10,172.9	10,172.9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0	진동리	1363	임	9,315.8	9,315.8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1	진동리	1364	임	9,615.3	9,615.3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2	진동리	1365	임	3,484.5	3,484.5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3	진동리	1366	임	13,132.2	13,132.2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4	진동리	1367	임	857.2	857.2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5	진동리	1368	임	2,810.7	2,810.7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6	진동리	1369	임	1,698.6	1,698.6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7	진동리	1370	체	70,707.1	70,707.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8	진동리	1371	임	33,925.7	33,925.7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34683 /34361
						정0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2 연세리버테라스 1001			지분34683 /322
39	진동리	1372	체	6,636.1	6,636.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0	진동리	1373	임	3,059.2	3,059.2	주식회사 한섬피앤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6-5			지분21589 /10764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21589 /10825
41	진동리	1374	임	38,211.0	38,211.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2	진동리	1375	임	8,038.5	8,038.5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3	진동리	1376	도	8,056.9	8,056.9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4	진동리	1377	도	544.0	544.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5	진동리	1378	도	229.5	229.5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34683 /34361
						정0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2 연세리버테라스 1001			지분34683 /34361
46	진동리	1379	도	122.2	122.2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34683 /34361
						정0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2 연세리버테라스 1001			지분34683 /322
47	진동리	1380	도	409.1	409.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8	진동리	1381	도	384.3	384.3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9	진동리	1382	도	18,473.9	18,473.9	주식회사 한섬피앤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6-5			지분21589 /10764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21589 /10825
50	진동리	1383	도	2,489.6	2,489.6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6176 /1999
						정0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2 연세리버테라스 1001			지분6176 /4177
51	진동리	1384	도	4,224.7	4,224.7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52	진동리	1385	도	518.6	518.6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2/1
						주식회사 한섬피앤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6-5			지분2/1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6 - 774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4조제1호)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 부분 수정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 연락처 : 전화 055-860-3804 팩스 860-3882, e-mail : redcheek@korea.kr

○ 남해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 직접방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 군경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u>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참전 명예수당 월 7만원 지급</u></p> <p>2. ~ 3. <생 략></p>	<p>제4조(지원사업)<현행과 같음></p> <p>1. <u>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참전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u></p> <p>2. ~ 3. <현행과 같음></p>

관 련 법 규

□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 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9.15.]

의견제출서

자치법규명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16 - 801호

남해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남해군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건축조례안

2. 개정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기능 심의대상 완화(안 제7조)
 - 미관지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삭제
- 전문위원회 설치 신설(안 제11조)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신설(안 제12조, 제13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안 제19조)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적용 대상 범위 확대(안 제21조)
-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안 제22조)
 - 단독주택 및 농어업용시설 등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재해복구 대상 제외(안 제23조)

-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신설(안 제27조)
 -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리 체계 개선
- 건축물의 유지관리(안 제31조)
 - 재해·재난 발생시 수시점검 대상 지정 가능
- 대지안의 공지기준 부속용도 기준 완화 등(안 제41조 [별표 3])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기준 신설(안 제42조제2항)
- 건축협정의 체결 신설(안 제44조)
 -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건축협정 구역을 지정하고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신설(안 제45조제3항)
- 이행강제금 감경 신설(안 제46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073, 팩스 860-3739, e-mail : n0820711@korea.kr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경관건축팀(860-3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2016 - 호

남해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건축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건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법·「건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조례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완화신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1항·제6조의2제2항·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은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5.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8년 3월 12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1조에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남해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모집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4분의 1이상 이어야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제7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군수가 발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2. 법 제14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대상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3.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은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분의 1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고 최고 층수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동의 층수가 10분의 1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는 변경

③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효력이 상실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체위원의 60퍼센트 이내의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
- ④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심의 대상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⑦ 제5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장이 임명하되,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단, 성별균형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 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신청자가 회의록 공개요청을 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을 하거나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등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건축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및 협의대상이 되는 사무부서의 담당 직위를 가진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업무담당자 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해당 건축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

⑤ 협의회 개최 후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⑥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공사비(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을 말한다)의 1퍼센트 비용(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말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 이행보증금 또는 적지 복구비를 예치한 때에는 그 금액은 예치금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을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④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남은 예치금에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및 반환 절차는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⑦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및 인명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닐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노외주차장, 옥외 운동시설 등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로서 조립식 구조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해수욕장의 개장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량 조립식 구조의 탈의시설, 한시적 영업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단, 연면적 75㎡이하 이면서 1개월 이하인 것은 제외)
5.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6. 햇빛이나 비를 가리는 시설로 군수가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것
7.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금연이 의무화된 시설의 야외에 설치하는 흡연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에 한정한다.)

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 감리 수행 후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의 건축신고
2. 법 제19조제2항의 용도변경

제26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천막구조 등 존치기간 1년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제27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 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_1 - \frac{(X - x_2)(y_1 - y_2)}{x_1 - x_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다만,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허가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대한건축사협회남해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 소속 건축사

③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대행절차 등은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①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사가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반기별 일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 ② 임시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 시 지급한다. 이때 사용승인은 최초 사용검사를 실시한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31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내에는 건축지도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고려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3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수가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
2.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4. 항만시설 및 화물터미널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준공인가를 득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내의 건축물
6.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의 옥상에 옥상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7.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한다) 용도로서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2이상을 높이 1미터(경사도 1:2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이상 조경석으로 조성된 대지위에 설치한 건축물 또는 도로와 접한 부분에 생나무울타리를 설치한 건축물
8.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설치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제34조(옥상조경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② 기존 건축물에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물 녹화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녹화비용 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5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밖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에 따라 설치한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 3. 연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공개공지는 다중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소공원 형태로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너비는 3미터 이상, 최소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 2. 공개공지를 필로티(piloti)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 이상
- 3. 공개공지에는 조명·조경·파고라·긴 의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면적비율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로 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면적비율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로 하되,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관측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지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축사, 작물재배사, 농가창고 등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7조(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 해당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면적의 100분의 85
2. 법 제56조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5
3.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15

② 제1항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녹색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새마을 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인 경우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마을주민 다수가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3.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허가·신고 수리한 사실상 도로인 경우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39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 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이 그 대지면적의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해서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41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제42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역은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 주택인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북측방향으로 채광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 건축물

제7장 건축협정

제44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구역을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장 보칙

제45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액 및 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금액 :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부과회수 : 2회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명령 등에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용도 변경한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착공한 경우
4.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벽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④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지시 기간 중에 추가 시공을 한 경우

제46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위반시점이 10년 경과(항공사진 등 증빙가능)하고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자진해서 등재 요청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영 [별표 1]제1호가목)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7조(옹벽 등 공작물 등에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제조 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5.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의 탱크·냉각탑·변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은 사람과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사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건축완화신청서

건축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지조건	위 치			
	지 역		지 구	
	면 적		지 목	
용 도	주용도		부속용도	
건축물의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구 조				
완화받고자 하는 이유				
완화받고자 하는 규정				
인접건물에 미치는 영향				
기타사항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남해군 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 하

【별표 1】

건축허가 등 수수료(제23조 관련)

연 면 적 합 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000원
	기 타 9,000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000원
	기 타 20,000원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50,000원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100,000원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200,000원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400,000원
1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800,000원
30만 제곱미터 이상	1,600,000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하며 공작물축조 신고의 경우에는 1건당 9,000원을 적용한다.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기준(제28조 관련)

1.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 건당 3만원
2.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건축물 규모	검사대행 소요시간	대행수수료 산정
1천 제곱미터 미만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검사대행 소요 시간에 「엔지니어링사 업대가기준의 기술사의 시간당 노임단 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함. (천원 단위 이하 절사)
1천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미만	4	
3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5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6	
1만 제곱미터 이상	8	

【별표 3】 <개정 2008.10.2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41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한다)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 1미터 이상
사. 가~바목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 주된 용도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의 2분의 1을 적용 (최소 0.5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 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이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한다)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4미터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이상
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 3미터 이상
사. 그 밖에 모든 건축물	- 0.5미터 이상

【관련 법령】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8.>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5.28.]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②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이유와 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의 질의민원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으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민원의 심의신청을 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 내에 심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허가권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 결정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4조의8(사무국)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

어야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

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위치·용도·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건축협정의 목적
4. 건축협정의 내용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6.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6.2.3.>

[본조신설 2014.1.14.]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 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1.]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2.]

제5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12.12.]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12.]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11.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1.19.>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19.>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1.28.>

1.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 및 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삭제 <2014.11.11.>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삭제 <2014.11.28.>

-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 아.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전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 자.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본조신설 2012.12.12.]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1. 그 밖의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12.]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제5조의5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의3 본문에 따라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3 단서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1. 건축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본조신설 2014.11.28.]

제5조의10(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① 법 제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질의민원 심의 신청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심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5제2항제3호에서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원 대상 행정기관의 명칭
2.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4조의6제2항 및 제4조의7제2항·제5항에 따른 위원회 출석, 의견 제시, 결정내용 통지 수령 및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2.12., 2013.3.23.>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1.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2.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3.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4.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0.29.]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14.10.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2012.4.10., 2014.10.14., 2014.11.11.,

2016.6.30.>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④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2015.4.24., 2016.1.19., 2016.6.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홍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⑥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2.>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

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4.11.11.>

⑧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⑩ 삭제 <2010.2.18.> [전문개정 2008.10.29.]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43조의3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기의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3.12.30., 2015.9.22., 2016.5.17.>

1. 다중이용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제2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항목의 점검 결과가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세부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축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본조신설 2012.7.19.]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2.12.12., 2014.10.14., 2015.9.22.>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4. 건축협정구역

② 삭제 <2006.5.8.>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6.5.17., 2016.7.19.>

[전문개정 1999.4.30.]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2.11.]

[중전 제115조의3은 제115조의5로 이동 <2016.2.11.>]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

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본조신설 2016.2.11.]

남해군 공고 제2016 - 803호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남 해 군 수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등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변경(안 제2조)
- 나. “제8호”를 “제14”로 변경(안 제8조1항)
- 다. “(명을 말노선한다)”를 “(노선명을 말한다)”로 변경(안 제11조)
- 라. “생활화촉진”을 “사용 촉진”으로 변경(안 제23조)
- 마. “도로명주소담당주사”를 “도로명주소 담당팀장”으로 변경(안 제29조)

3.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 연락처 : 전화055-860-3473, 팩스860-3700, e-mail : namnam80@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전화 055-860-3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8호”를 “제14호”로 한다.

제11조의 “(명을 말노선한다)”를 “(노선명을 말한다)”로 한다.

제23조 중 “생활화촉진”을 “사용 촉진”으로 한다.

제29조의 “도로명주소담당주사로”를 “도로명주소 담당팀장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u>같은법</u>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같은법</u>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p>	<p>제2조(적용범위) -----, <u>같은법</u>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같은법</u>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p>
<p>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p>②~③ <생 략></p>	<p>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p> <p>----- 제4호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u>명을 말노선한다</u>)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생 략></p>	<p>제11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u>노선명을 말한다</u>)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p>
<p>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도로명주소의 <u>생활화</u>추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2. <생 략></p> <p>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u>생활화</u> 추진 사업 지원</p>	<p>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추진) -----<u>사용</u>추진-----</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u>사용</u>추진-----.</p>

4. 그 밖에 군수가 도로명주소의 생활
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주사로 한다.

② <생 략>

4 _____ 사용
촉진 _____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남해군 공고 제2016 - 804호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남 해 군 수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 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등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 나. 군수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사람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삭제(안 제3조제3항)
- 다. 심의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위배 및 겸임 규정을 삭제(안 제3조제4항)
- 라. “새주소업무 담당주사로”를 “도로명주소 담당팀장으로”로 변경(안 제3조제5항)

3.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 연락처 : 전화055-860-3473, 팩스860-3700, e-mail : namnam80@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전화 055-860-3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사람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를 “사람 중에서 ”로 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5항의 “새주소업무 담당주사로”를 “도로명주소 담당팀장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u>」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남해군 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u>」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남해군 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과장, 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사람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u> ----- -----.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남해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u>새주소업무 담당주사로</u> 한다.</p>	<p>제3조(구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사람 중에서</u> ----- -----. ④ <삭 제> ⑤ 간사는 <u>도로명주소 담당팀장으로</u> 한다.</p>

남해군 공고 제2016 - 805호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남 해 군 수

1. 제정이유

이순신 순국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3조)

나. 시설의 적용범위 및 관리주체 명시(안 제4조 ~ 제5조)

다. 시설 입장(휴장) 및 매표시간, 입장료 면제 및 감면 명시(안 제6조 ~ 제8조)

라. 영상관 관람시간, 관람료 면제 및 감면, 수장품 관리 명시(안 제9조 ~ 제12조)

마. 시설내 행위제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규정 명시(안 제13조 ~ 제14)

바. 캠핑장 예약, 이용료 징수(감면) 및 반환, 사용자 준수 사항 명시(안 제15조 ~ 제22조)

사. 시설 손해배상, 편의시설 설치·운영 명시(안 제23조 ~ 제24조)

아. 위탁운영, 위탁료, 위탁계약 및 취소, 손해보험 가입 등 명시(안 제25조 ~ 제32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해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055-860-8615, 팩스055-860-3748, e-mail : chr1027@korea.kr

남해군 조례 제 호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순신 순국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이순신 순국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72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공원의 관람을 위하여 공원 안으로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람료"란 이순신 영상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캠핑장 이용료"란 캠핑장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군수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1. 호국광장 : 바다광장, 하늘바다휴게소, 노량해전캠핑장, 위령탑, 각서공원 등
2. 관음포광장 : 리더십체험관, 이순신 밥상체험관, 이순신 인물체험공원, 안내광장, 어울림광장 등
3. 기존 시설 통합 : 이순신 영상관(이하 “영상관”이라 한다),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제5조(관리주체) ① 군수는 공원을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직접운영

제6조(개장 및 휴장) ① 공원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 한다.

② 공원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 날 휴장한다)
2. 공원 전체 시설물 안전점검이나 시설수리가 필요한 기간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장일

제7조(입장 및 매표시간) ① 공원의 입장료는 별표1과 같다.

② 공원의 입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1.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22:00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4월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③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입장권은 당일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다.

④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다만,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3.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6.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7.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8. 주민등록이 남해군으로 되어 있는 군민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남중권발전협의회 회원 시·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입장료 50%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시·군은 별표2와 같다.

제9조(관람 및 관람시간) ① 영상관의 관람료와 관람시간은 별표3와 같다.

② 영상관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영상관 관람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다만,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3.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국민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6.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7.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8.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관람표를 적용한다.

제11조(수장품의 수집, 제작·유통 등) ① 군수는 영상관의 영상물 및 전시물 관련 자료 및 학술적 연구·조사에 필요한 유물 등을 수집, 제작·유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상관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 제작·유통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장품의 관리) ① 군수는 수장품에 대한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수장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행위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원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촬영 및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공원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5. 지정된 지역 외에서 취사 행위
6. 공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7. 공원 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인화물질, 위험물 또는 흥기 등을 소지하는 행위
8.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는 행위
9.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4조(체험프로그램운영) 공원 내 시설을 사용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5조(캠핑장 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별도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캠핑장 이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5의 기준에 따른 캠핑장 이용료(이하 “이용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캠핑장 이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서 규정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민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3.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8조(캠핑장 이용료의 징수 방법) ① 이용료는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에 따른 은행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징수한 이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19조(캠핑장 이용료 반환) 관리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별표6와 같이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제20조(캠핑장 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캠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때
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시설이용을 위한 이용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제21조(캠핑장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캠핑장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7의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24조(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소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위탁운영

제25조(위탁운영) 군수는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탁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공원의 일부를 수탁하는 자의 사용료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0조 및 제33조를 적용한다.

제27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목적,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관리 주체 모집은 공고를 통해 실시하고,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남해군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턴 2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와 운영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③ 수탁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④ 수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는 사전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2. 수탁조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단,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3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손해보험 가입) 공원 시설을 수탁한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 가액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2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이순신 순국공원 입장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어 른	청 소 년	어 린 이
개 인	3,000	2,500	2,000
단 체	2,500	2,000	1,500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교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중·고등학교
3. 군 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지요원 포함)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 체 : 유료입장객 중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별표 2]

남중권발전협의회 회원 시·군(제8조 관련)

회원 시·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	--

[별표 3]

이순신 영상관 관람료 및 관람시간(제9조 관련)

1. 관람료

(단위 : 원)

구 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 인	3,000	2,000	1,500
단 체	2,000	1,000	800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교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중·고등학교
3. 군 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지요원 포함)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 체 : 유료입장객 중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2. 관람시간

구 분	전시 관람시간	영상물 상영시간
성수기	09:00 ~ 2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 10시, 11시 • 오후 :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 야간 : 19시, 20시
비수기	09:00 ~ 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 10시, 11시 • 오후 : 13시, 14시, 15시, 16시

1. 성수기 : 5월 1일 ~ 10월 31일
2. 비수기 : 11월 1일 ~ 다음연도 4월말

[별표 4]

이순신 영상관 관람료 (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어 른	청 소 년·군 인	어 린 이
개 인	2,000	1,500	1,000
단 체	1,000	1,000	500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교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중·고등학교
3. 군 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지요원 포함)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 체 : 유료입장객 중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별표 5]

캠핑장 이용료 및 이용방법(제16조 관련)

1. 이용료

구 분	요 금	비 고
1박2일 기준 (1사이트)	35,000원	* 사이트 당 4인/차량 1대 - 1인 추가 시 이용료 추가 - 추가 차량은 공원 외 주차장 이용 * 유아(36개월 미만)는 무료

2. 이용방법

- 입장 시간 : **14시** / 퇴장 시간 : **12시**
- 입장 제한 시간 : 21시30분까지(이후로는 입장 불가능)
- 자리 이동 불가(사이트 임의 이동 통제)
- 공원 폐장 시간 이후(밤 10시) 이순신 영상관 등 전시관람 행위 통제 및
공원 외부 출입 불가
- 애완동물 동반 입장 금지
-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시 퇴장 조치
- 자연재해 발생 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

[별표 6]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제19조 관련)

구분	내용	사 용 료 반 환 기 준		비 고	
캠 핑 장	성수기 주중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혹은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성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혹은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비수기 주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비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별표 7]

캠핑장 사용수칙 (제22조 관련)

이 곳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사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 장
 - o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 o 시설사용료는 사용자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 o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이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 동 차
 - o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o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잔디밭의 차량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 o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o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3:00부터 07:00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o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 o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o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o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 o 쓰레기봉투는 규정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7. 동 물
 - o 시설내에서는 애완동물을 포함한 일체의 동물의 출입을 금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o 캠핑장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o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o 캠핑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 보
 - o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o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o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o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o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의 건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공고 제2016 - 816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한국전력공사 남해지사		
	대표자 (성 명)	양하운	주소	남해군 남해대로 2962
소하천명		등모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64-56		
	면적	0.192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16. 10. 14. ~ 2017. 10. 13.		
	목적 및 사유	전력 공급 설비(전주) 신설		

남해군 공고 제2016 - 819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변경)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6년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남 해 군 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금송천	금송 소하천 정비사업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705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875	1,378	-	-	2015. 10. 8.	2016. 12. 5.	재해 예방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금송소하천 시행계획

1. 소하천 공사의 명칭 : 금송소하천 정비사업
2. 사업목적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통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공사개요
 - 위 치 : 남해군 삼동면 금송마을 일원
 - 사업량 : 하천정비 L=689m, B=8~15.2m
 - 전석쌓기 A=5,568.62㎡, 낙차공 7개소, 하상보호공 5개소 등
 - 사업비 : 금1,000백만원
4.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안전총괄과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공사기간 : 2015. 10. 8. ~ 2016. 12. 5.
 - 공사기한변경 : 당초 2016. 10. 6 → 변경 2016. 12. 5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물건의 조서 : 붙임1
7. 소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비치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보상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15. 10월 이후
 - 보상절차 및 방법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 보상가액산정 :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보상가액의 산출평균치
8.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남 해 군 공 보

2016년 11월 3일

제 567 호 (89)

○ 시설관리자 : 남해군수(안전총괄과장)

- 9.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 10. 소하천정비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도 : 붙임 2
- 11. 실시설계도서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비치
- 12.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단위: 백만원)

소하천명	2016년도 사업비				향후계획				비고
	총사업비	국 비	도 비	군비	총사업비	국 비	도 비	군비	
금송천	1,000	-	500	500	-	-	-	-	

13.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1) 군관리계획(하천) 결정(변경) 조서

가) 방재시설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52	금송천	소하천	삼동면 금송리 산228	삼동면 금송리 726	-	1.65	7~8	13,100	남해군고시 제2009-10 (2009.02.02.)	
변경	52	금송천	소하천	삼동면 금송리 산228	삼동면 금송리 726	-	1.65	7.0~15.2	16,532		

나)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2	금송천	·폭원변경 및 면적변경 -A=13,100㎡→16,532㎡ (증 3,432㎡) -B = 7~8m → 7.0~15.2m	· 지적분할 면적 확정에 따른 하천면적 변경

14. 기타사항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55-860-3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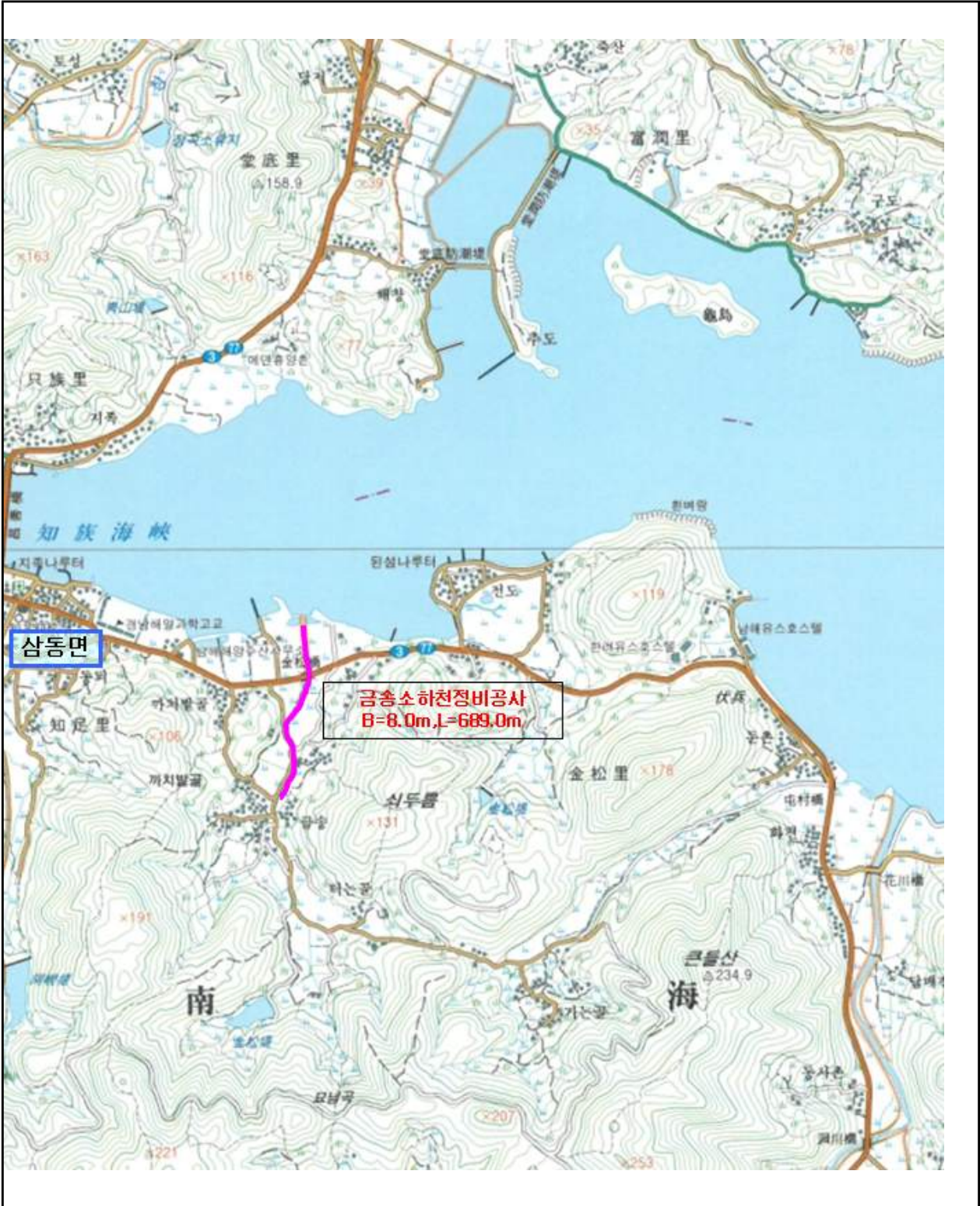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물건의 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			비고
	시· 군	읍· 면	리· 동					지 분	성명	주소	구분	주소	성명	
소계						166	166							
1	남해 군	삼동 면	금송 리	930-1	답	126	126		이*업	남해군 삼동 면 금송리				
2	남해 군	삼동 면	금송 리	933-1	답	40	40		김*배	남해군 삼동 면 금송리				

<붙임 2>

위 치 도



남해군 공고 제2016 - 827호

남해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남해군 고시 제2015-110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남해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남 해 군 수

○공사완료 공고대상 사업

번호	시설명	공사명	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비고
1	도로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봉전회관~노인복지회관) 개설공사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일원	도로개설 L=177m, B=12m,	2016.02.17. ~2016.09.13	

남해군 공고 제2016 - 828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상주지구단위계획도로 소로2-8호 2구간)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남해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도로, 상주지구단위계획도로 소로2-8호 2구간)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3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지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도로)
 - 명칭 : 상주지구단위계획도로(소로2-8호) 2구간 개설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규 모				결 정(M)		금 회(M)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폭	연장	폭	연장	
소로	2	8	8	8	271	8	125.5	

- 4. 사업시행자
 - 성명 : 남해군수(도시건축과)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5. 사업기간
 - 당초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변경 : 2015년 12월 28일 ~ 2017년 12월 31일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지적분할 측량결과 등 반영)

남 해 군 공 보

(94) 제 567 호

2016년 11월 3일

7.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및 토지분할로 인한 편입면적의 정정
8. 관계도면: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에 비치】
9. 공람기간 : 공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그권리자)
	읍·리	지번				성 명	주 소	
1	상주리	1059-2	도로	20	20	남해군		
2	상주리	1059-4	대	130	130	남해군		
3	상주리	1060-3	도로	13	13	남해군		
4	상주리	1061-6	도로	86	86	남해군		
5	상주리	1061-7	도로	97	97	남해군		
6	상주리	1061-9	대	89	89	김*선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	
7	상주리	1061-10	대	77	77	남해군		
8	상주리	1061-11	대	39	39	남해군		
9	상주리	1094-6	도로	40	40	남해군		
10	상주리	1094-13	전	92	92	남해군		
11	상주리	1094-15	대	51	51	전*렬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	근저당권(동남해농업협동조합)
12	상주리	1094-16	대	10	10	전*렬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	근저당권(동남해농업협동조합)
13	상주리	1095-1	도로	93	93	남해군		
14	상주리	1106-1	도로	23	23	남해군		
15	상주리	1107-3	도로	83	83	강*선	亡人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대상물건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그권리자)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수량	성명	주소	
1	상주리 1061-2	창고등 (방앗간)	블럭스레트	99.17m ²	김*선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	
		근린생활시설 (1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99.12m ²	"	"	
		근린생활시설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99.12m ²	김*선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	
		주택 (3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99.12m ²	"	"	
		가추 (1층)	슬라브 (4*1)	4m ²	"	"	
		보일러실 (1층)	슬라브 (2.5*1)	2.5m ²	"	"	
		세면장 (1층)	판넬조 (2*4)	8m ²	"	"	
		다용도실 (1층)	블럭조판넬 (3*2)	6m ²	"	"	
		계단 (난간포함)	콘크리트 (1.2*9+1.2*3)	1식	"	"	
		물탱크	FRP	2식	"	"	
		화장실	블럭슬라브 (3*3)	9m ²	"	"	
		주택 (1층)	블럭슬라브 (4.8*8+3.5*3)	48.9m ²	"	"	
		가추	슬라브 (2.5*3)	7.5m ²	"	"	
		주택 (2층)	블럭슬라브등 (4.7*8+1.7*2.5)	41.85m ²	"	"	
		계단 (난간포함)	콘크리트 (1.2*5+1.2*2)	1식	"	"	
		바닥포장	콘크리트 (1*5.5+2.5*8+2*11)	47.5m ²	"	"	
		수도		1식	"	"	
		지하수		1식	"	"	

남 해 군 공 보

(96) 제 567 호

2016년 11월 3일

연 번	소재지	대상물건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그권리자)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수량	성 명	주 소	
		대문	철재 (1.5*1)	1식	"	"	
		다용도실 (3층)	판넬조 (3.5*1.5)	5.25㎡	"	"	
		가추 (3층)	슬라브 (1*9)	9㎡	"	"	
		담장	블럭조판넬 (15*1.0(H))	15㎡	"	"	
2	상주리 1094-1,11	주택 (1층)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	95.94㎡	전*렬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	근저당권(동남해 농업협동조합)
		주택 (2층)	벽돌구조	78.96㎡	"	"	"
		창고 (1층)	블럭구조 평슬라브	31.35㎡	"	"	"
		계단 (난간포함)	콘크리트 (17*1.25+17*0.6)	1식	"	"	
		수도		1식	"	"	
		전기		1식	"	"	
		보일러실 (2층)		1식	"	"	
		물탱크	FRP	1식	"	"	
		샷시		10.5㎡	"	"	
		에어컨		5식	"	"	
		옥상난간	철재	14㎡	"	"	
		대문	철재 (1.5*0.5)	1식	"	"	

남해군 공고 제2016 - 829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2-34호
교육청~봉황산)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남해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2-34호 교육청~봉황산)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3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도로)
 - 명칭 : 도시계획도로(소로2-34호, 교육청~봉황산) 개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규 모				결 정(M)		금 회(M)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폭	연장	폭	연장	
소로	2	34	8~12	8	420	8~12	239	

4. 사업시행자
 - 성명 : 남해군수(도시건축과)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기간
 - 당초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변경 : 2016년 2월 4일 ~ 2017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남 해 군 공 보

(98) 제 567 호

2016년 11월 3일

- 7.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및 토지분할로 인한 편입면적의 정정
-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에 비치】
- 6. 공람기간 : 공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그권리자)
	읍·리	지번				성 명	주 소	
1	아산리	373-10	대	29	29	이*철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73-3	
2	아산리	373-13	대	98	98	남해군		
3	아산리	373-12	대	39	39	남해군		
4	아산리	373-11	대	107	107	남해군		
5	아산리	373-14	대	19	19	남해군		
6	아산리	1421-4	구	958	18	농림축산식품부		
7	아산리	1424	도	94	10	기획재정부		
8	아산리	374-1	전	161	161	남해군		
9	아산리	253-9	대	166	166	남해군		
10	아산리	253-10	전	215	215	남해군		
11	아산리	376-2	전	221	221	남해군		
12	아산리	243-1	전	178	178	남해군		
13	아산리	243-2	전	79	79	남해군		
14	아산리	377-8	전	102	102	남해군		
15	아산리	379-10	대	126	126	남해군		
16	아산리	242-4	전	63	63	남해군		
17	아산리	242-6	전	101	101	남해군		
18	아산리	379-5	전	17	17	남해군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그권리자)
	읍·리	지번				성 명	주 소	
19	아산리	379-11	대	152	152	남해군		
20	아산리	379-12	전	107	107	한*석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79-2	
21	아산리	241-2	전	8	8	한*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79-2	
22	아산리	241-3	전	254	254	한*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79-2	
23	아산리	380-1	전	64	64	남해군		
24	아산리	240	전	306	306	남해군		
25	아산리	239-1	전	360	360	남해군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연 번	소재지	대상물건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그권리자)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수량	성 명	주 소	
1	242-4,6	동백	R5	2주	김*철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242-5	
		향나무	R5	5주	"		
		소나무	R5	1주	"		
		연산홍	R5	6주	"		
2	379-12	창고	블럭 스투트	6㎡	한*석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79-2	
		감나무	R15~20	6주	"		
		물탱크	FRP	2식	"		
		지하수		1식	"		
3	241-2,3	감나무	R12	1주	한*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79-2	
		매실나무	R15~20	6주	"		
		매실나무	R5	10주	"		
		유자나무	R10~15	2주	"		
		동백나무	R15~20	3주	"		

남해군 공고 제2016 - 830호

어업권 면허처분 사항 및 어업권 포기신고 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포기 신고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454호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창선면 언포	34,000	2016. 10. 27. 2026. 10. 26. (10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	강○삼 외2명 (김○균, 정○진)	대체개발 (어장이설 및 합산)

○ 양식어업권 포기신고 수리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00호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해면 어류	창선면 언포	16,000	2008. 1. 9 2018. 1. 8 (10년)	경남 사천시 군 영숲길 ***	김○균외 1명 (정○진)	대체개발 (합산)
남해양식 제371호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해면 어류	남면 유구	18,000	2012. 7. 1 2022. 6.30 (10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	강○삼	대체개발 (어장이설)